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9.6.24.)

---

#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



총무위원회

# 목 차

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4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4
6	거창군 공유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	28
7	거창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	31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유태정]

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어 있는 장애등급 표현을 제때에 개정·시행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용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6조)

가) 6개 조례

나) 개정유형

(1) 장애등급 ⇒ 장애정도

- (2)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 7. 1. 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로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 “장애등급”은 ⇒ “장애정도”로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조례는
  - 제1조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2조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조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4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5조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 제6조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등 6개 조례임

#### ○ 검토의견으로는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등급제 일괄개정을 위한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제2조(「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한다.

제3조(「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4조(「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들을)”으로 한다.

제5조(「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로 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제6조(「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 신영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장, 읍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직급 상향 조정

- 1)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 4~5급 → 4급
- 2) 거창읍장 : 5급 → 4~5급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안은 2019. 4. 3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 주요내용은

- 직급 상향조정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 위	당 초	변 경	비 고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4~5급	4급	
거창읍장	5급	4~5급	실·국 감축분

#### ○ 검토의견으로는

- 종전에는 기구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던 기구의 설치 및 직급 운영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 실·국의 수를 감축하는 수만큼 국장·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4급의 범위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02	322	14	134	67	67	41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70	318	14	107	40	67	40	40	151
	4급	3 ±	3 ±							
	4~5 급	2 3	0 2		1		1		1 0	
	5급	37 38	15	3	5	4	1	3	0 ±	11
	6급 이하	628	300	11	101	36	65	37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 이은주]

가. 제안이유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19. 6. 5.)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초지법」 등 타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함(안 제6조제6항)  
- 재산관리 담당부서장 ⇒ 재산관리 담당국장
- 2) 「초지법」에서 위임한 대부료를 신설(안 제24조제7항)

- 공유지에 대한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 3)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안 제30조제5항·제6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 감경
- 4) 그 밖의 법령 폐지 및 개정사항 반영함(안 제15조의2제1호, 제24조제6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초지법」에서 위임한 대부료율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6조제6항에서는 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을,
- 안 제24조제7항에서는 「초지법」에서 위임한 대부료율을 신설하는 사항을,
- 안 제30조제5항·제6항제3호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사용료·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하는 사항을,
- 안 제15조의2제1호, 제24조제6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그밖의의 법령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초지법」에서 위임한 대부료율 신설은 국유지 대부료율 규정과 동일한 적용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자는 내용으로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산관리 담당부서장)”을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제24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5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고도의 기술”을 “신성장동력산업기술”로 “100만달러”를 “200만달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제7항·제8항을 제8항·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생략) ⑤ <u>민간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u>재산관리 담당부서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⑪ (생략)</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외국인토지법 시행령</u>」 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실경작자</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6.12.28.) 3.~6.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lt;삭 제&gt;</p> <p>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u>재산관리 담당국장</u>)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⑪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p> <p>제24조(대부료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u>농업인</u>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6.12.28.) 3.~6.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u>「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u>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p> <p>⑦ 「<u>초지법</u>」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p>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 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사.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생략)

사. 제2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삭제(2016.12.28.)

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신설>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바.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⑦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가.~라. (생략)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라. (생략)

<신 설>

⑦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가.~라.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

가.~라.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 조춘화]

가. 제안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에서 면제하는 진료비 및 검사비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기준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3조·별표)
  -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감염병 예방, 국가 등 행사지원, 공무상 요청, 수사상 필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보건의료 취약계층 방문진료

- 진료비 면제 : 65세 이상 거창군 주민, 장기기증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병역명문가중 소지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조례는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는 면제 기준이 혼선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별표에서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진료비 및 검사비의 면제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 누구나 혼선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조제목·본문, 제5조 조제목·제1항 중 “진료비등”을 “진료비 등”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와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이하 “진료비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li> <li>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응급의료</li> <li>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 진료와 예방접종</li> <li>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5.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및 방문 진료</li> <li>6.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li> <li>7. 국가, 경상남도 또는 거창군이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 지원</li> <li>8.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li> <li>9.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장기기증자</li> <li>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li> <li>11.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12.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li> <li>13.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li> </ol>	<p>제3조(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의 진료비 및 검사비 면제기준은 별표와 같다.</p>



제4조(진료비등의 납부방법) 진료비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진료비 등의 납부방법) 진료비 등은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날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해야 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반환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진료 등을 받거나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은주]

### ①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 가. 제안이유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 및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569번지
- 대지면적 : 3,750.1m<sup>2</sup> (토지소유자 : 윤\*\*)
- 건축규모 : 지상 1층(농기계보관창고 1동 및 운영사무실 1동), 연면적 800m<sup>2</sup>

- 사업기간 : 2019. 1. ~ 2020. 12.
- 사업비 : 1,900백만원(국 500, 도 150, 군 1,250)
  - 부지매입비 : 300백만원
  - 건축비 : 800백만원
  - 임대농기계 및 운영장비 : 800백만원
- 주요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및 운영사무실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토지	가조면 장거리 1569	답	3,750.1	73,126,950	2019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윤**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위치도 및 지적도



## 라) 현황사진(전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 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소농으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힘든 농가에게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 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동의안은 동부권역(가조)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농업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음

#### ※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

- 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임대사업소
-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주상, 웅양, 고제)
-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북상, 위천, 마리)
- 남거창농협 농기계임대(신원면)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거창군 공유재산(일반재산) 토지 교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5. 3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은주]

### 가. 제안이유

- 1) 김용마을 경로당이 협소하여 마을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2) 김용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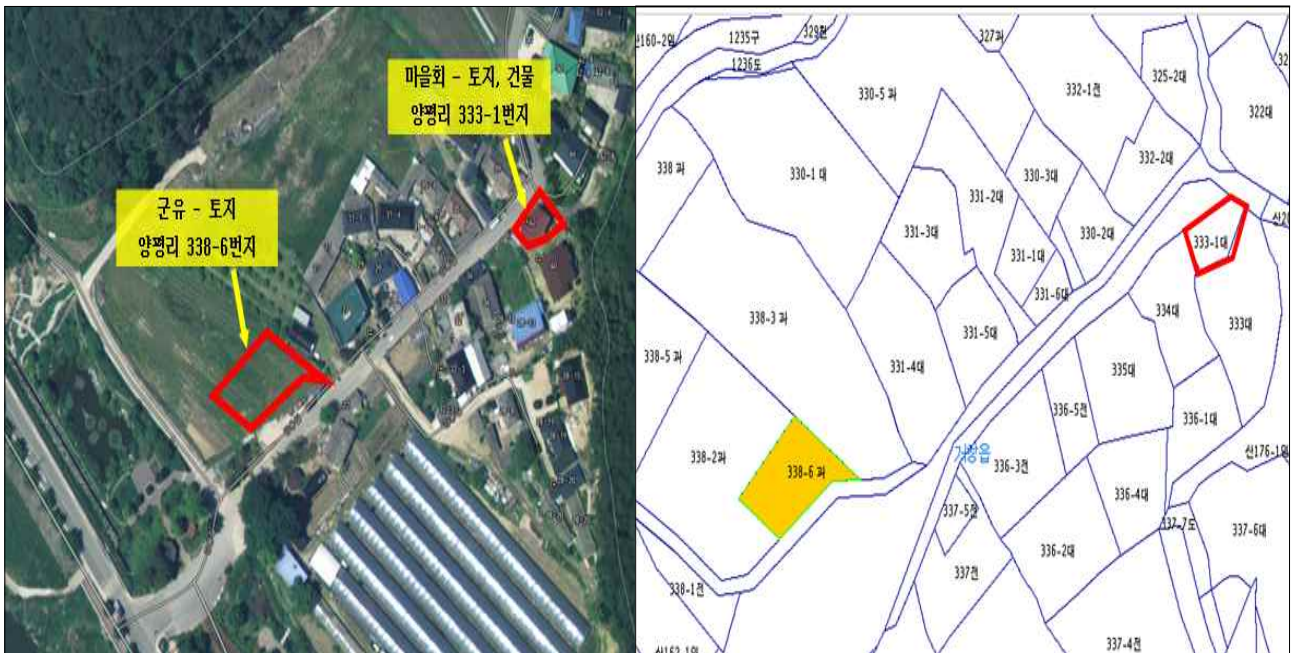
- 1) 재산교환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재산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종목)	구조	면적(m <sup>2</sup> )	비고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3-1	대지	-	83	
건물	“	-	조적조	45.91	

○ 공유재산의 표시

종별	재산소재지	지목(종목)	구조	면적(m <sup>2</sup> )	비고
토지	거창읍 양평리 338-6	과수원	-	230	일반재산

다) 위치도 및 지적도



라) 현황사진(전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 가. 김용마을의 현 경로당(45.91㎡)이 협소하여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경로당은 주민 복지증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 경로당 신축은 오랜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어 왔음.
- 나. 본 동의안은 거창군토지와 마을회 재산을 교환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것임.
- 다. 김용마을은 우리사회에서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오랜 세월동안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기타의견 :

- 신축경로당 준공후 현 마을회관은 즉시 철거한다.



의안번호 제2019 - 91호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19. 6. 20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5. 30.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9. 5. 3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41회(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9. 6. 20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 최태환]

#### 가. 제안이유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0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1)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 2) 시설현황

### ○ 골프연습장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3,917㎡	지상2층	258.0㎡	300.2㎡	철근콘크리트구조	10타석	100m



3)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4)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5)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6) 예산지원 : 없음

7)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9년 06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9년 07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9년 07월

○ 위탁계약 체결 : 2019년 07월

○ 위탁운영 : 2019년 08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래만]

본 동의안은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 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 ○ 주요내용은

- 대상사무 : 거창 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으로는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를 즐기는 것은 골프 스포츠는 대중화(월 회원 약80명) 되어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은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